

해외사업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현재 해외사업은 비투자형사업 위주로 진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
- 해외사업리스크관리위원회(“리스크위원회”) 설치후 운영결과에 따른 비효율적 조항정리 필요

2. 주요내용

- 사업구분에서 비투자형사업을 세분화하여 제7조 사업예비타당성 검토 및 제13조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와 연계
- 공적개발원조형사업의 경우 사업예비타당성 검토 및 리스크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제7조 단서조항 및 제13조제2항 신설)
- 리스크위원회의 위원참석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개최 방법을 실제 운영에 적합한 형식으로 표현
(제25조, 제27조, 제28조)

해외사업규정 일부개정(안)

해외사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사업을 말한다”를 “국제수주형, 공적개발원조형사업으로 구분한다.”로 한다.

제7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공적개발원조형사업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적개발원조형사업은 제1항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리스크위원회의 위원은 주관부서장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공사 직원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 25명 이내로 위촉하며, 회의개최는 1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27조제2항 중 “서면의견으로”를 “의견서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재적의원”을 “회의개최 구성위원”으로 한다.

별지제1호서식의 붙임서식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집통지서 수령증”을 삭제한다.

별지제2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 건 서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	
안 건 : 일 시 : 위원명 :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의 건	
심의의결	찬성() 조건부 찬성() 반대()
심의의견	

별지제4호서식 중 회의목록표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회 의 목 록 표			
의 안 번 호		제 안 부 서	
건 명 : 심의결과 : 주요의견 : 붙임 : 위원별 의견서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론 대비표

현행	개정(안)	사유
제4조(사업구분) 해외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투자형사업이란 공사가 현지국가에 직접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2. 비투자형사업이란 공사가 현지국가에 직접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고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의 <u>사업을 말한다.</u>	제4조(사업구분) 해외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현행과 같음) 2. 비투자형사업이란 공사가 현지국가에 직접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고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의 사업으로 <u>국제수주형, 공적개발원조형사업으로 구분한다.</u>	-현재 해외사업은 비투자형사업 위주여서 구체적 정의 필요 -제13조제2항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불필요와 연계성 유지 필요
제7조(사업예비타당성 검토) 해외사업부서장은 제6조에 따른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투자여건 및 예상수익률 분석 등을 통한 사업예비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예비타당성 검토) 해외사업부서장은 제6조에 따른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투자여건 및 예상수익률 분석 등을 통한 사업예비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단, <u>공적개발원조형사업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u>	-원조사업의 경우 리스크가 없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함

현행	개정(안)	사유
제13조(사업 타당성심사 등) 주관부서장은 제4조의 해외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등의 검증을 위하여 제24조 규정에 의한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되, 투자형사업의 경우 경영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제13조(사업 타당성심사 등) ①주관부서장은 제4조의 해외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등의 검증을 위하여 제24조 규정에 의한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되, 투자형사업의 경우 경영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공적개발원조형사업은 제1항의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공적개발원조사업은 리스크가 없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함
제25조(구성) ① 리스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공사 직원 및 주관부서장이 선정·위촉한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25조(구성) ① 리스크위원회의 위원은 주관부서장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공사 직원 및 관련분야의 전문가 25명 이내로 위촉하며, 회의개최는 1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리스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모집단 확대 필요
제27조(운영) ② 리스크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참석은 불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u>서면의견</u> 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운영) ② 리스크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참석은 불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u>의견서</u> 로 갈음할 수 있다.	-리스크위원회 운영결과 서식의 부적정함을 발견하여 서식의 제목 및 내용을 수정
제28조(의결) ① 리스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의결) ① 리스크위원회의 회의는 회의개최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관련분야 전문가 회의참석 요청 시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불참에 대비하여 적정인원의 모집단을 구성하여 운영

현행	개정(안)	사유
[리스크 관리위원회 관련 붙임서식] “<u>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집통지서 수령증</u>”	(삭 제)	-IT기술의 발달에 따른 충분한 출석안내 -제2호 및 제4호서식에 의하여 안내통지서 도달확인 가능
[제2호서식] 서면의견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 안건 :		

현행	개정(안)	사유																																
[제4호서식] 회의목록표 <table><tr><td>의안번호</td><td></td><td>제안부서</td><td></td></tr><tr><td colspan="4">건명:</td></tr><tr><td colspan="4">심의내용:</td></tr></table> 년월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위 의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명날인함. 위원장 위원 ...	의안번호		제안부서		건명:				심의내용:				[제4호서식] 회의목록표 <table><tr><td>의안번호</td><td></td><td>제안부서</td><td></td></tr><tr><td colspan="4">건명:</td></tr><tr><td colspan="4">심의결과:</td></tr><tr><td colspan="4">주요의견:</td></tr><tr><td colspan="4">붙임: 위원별 의견서</td></tr></table> 년—월—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위 의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명날인함.~~ ~~위원장 위원 ...~~	의안번호		제안부서		건명:				심의결과:				주요의견:				붙임: 위원별 의견서				-리스크위원회 운영결과 서식의 부적정함을 발견하여 서식의 내용을 수정
의안번호		제안부서																																
건명:																																		
심의내용:																																		
의안번호		제안부서																																
건명:																																		
심의결과:																																		
주요의견:																																		
붙임: 위원별 의견서																																		